



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

1. 소득세법 개정 내용

(1)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(소득령 §16)

<개정이유>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○ 일반근로 : 100만원 ○ 원양어업, 항행 : 300만원 ○ 건설현장 : 300만원 - 감리업무 포함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(좌 동) - 설계업무 포함

<적용시기> '19.2.12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2)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(소득령 §16)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형평성 고려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○ 공무원, 코트라, 코이카, 한국관광공사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○ (좌 동) ○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

<적용시기> '19.2.12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3)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(소득법 §12, 소득령 §17의3·§18②)

<개정이유> 지식재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○ 연 300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○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○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한도 확대 ○ 연 500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대상 추가 ○ (좌 동) ○ (좌 동) ○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

<적용시기> '19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4)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(소득령 §17)

<개정이유>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○ 비과세기준 ①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,500만원 이하 ○ 대상직종 ※ 종전 대상직종 · 공장, 광산 근로자 · 어업 종사 근로자 ·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·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· 청소·경비, 조리·음식 서비스직, 매장 판매직,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확대 ○ 비과세기준 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② (좌 동) ○ 대상직종 확대 (좌 동) - 돌봄서비스, 미용관련서비스, 숙박시설 서비스

<적용시기> '19.2.12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

(5)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(소득법 §47②)

<개정이유>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 <input type="radio"/> 1일 1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금액 인상 <input type="radio"/> 10만원 → 15만원

<적용시기> '19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6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(소득법 §52⑤)

<개정이유> 서민·중산층 주거부담 완화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<input type="radio"/> (공제한도) 300~1,800만원 <input type="radio"/> (대상)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<input type="radio"/> (주택요건)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	<input type="radio"/> 기준시가 5억원 이하

<적용시기> '19.1.1.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

(7)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(소득법 §59의2)

<개정이유>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세액공제 대상 <input type="radio"/> 6세 이상의 자녀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대상 조정 <input type="radio"/> 7세 이상의 자녀 (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)

<적용시기> '19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8)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(소득법 §59의4)

<개정이유> 기부 활성화 지원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○ 2천만원 이하 : 15% ○ 2천만원 초과분 : 30%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○ 1천만원 이하 : 15% ○ 1천만원 초과분 : 30%

<적용시기> '19.1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(9)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(법인법 §24, 소득법 §34③·§61②)

<개정이유> 기부 활성화 지원 및 장부보관 의무기간 5년인 점을 감안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○ (이월공제기간) 5년간 이월 ○ (적용시기) 2008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	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○ 5년 → 10년 ○ (적용시기)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

<적용시기> '19.1.1.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, '13.1.1.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

(10)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(소득법 §150)

<개정이유>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조합* 조합원 세액공제 *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·납부할 수 있는 제도 ○ (공제율) 10%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율 축소 ○ (공제율) 5%

<적용시기> '19. 1. 1.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

(11)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(소득령 §118의5, 조특령 §117의3)

<개정이유> 출산비용 부담 완화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○ 진찰·치료·질병예방 비용 ○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대상 추가 ○ (좌 동) ○ (좌 동) ○ 산후조리원 비용 - (대상)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,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- (한도) 200만원

<적용시기> '19.2.12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

(12)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 (소득령 §118의5, §225의3 신설)

<개정이유>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○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* * 진찰·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, 의약품 구입비용 등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○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(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○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○ 수산업협동조합법, 신용협동조합법,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○ 군인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, 대한지방행정공제회, 경찰공제회, 대한소방공제회

<적용시기> '19.2.12.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(13)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제출 대상기관 조정 (소득령 §118의6)

<개정이유> 실제 학자금대출채권을 소유·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관 조정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대상 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8에 따라 구상채권 등을 매수한 법인 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료 요구 대상 기관 조정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

<적용시기> '19.2.12.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2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

(1)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(조특법 §16②, 조특령 §14⑩)

<개정이유>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징요건)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○ (추징방법)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, 원천징수의무자·납세조합·세무서장이 추징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div> 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매에 '일부 환매'가 포함됨을 명시 ○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징세액 : 투자금액의 3.5% * (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) 10%×(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)35%

<적용시기> '19.2.12.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(5) 벤처기업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적용배제 (조특령 §14①)

<개정이유> 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벤처기업 신주에 15% 이상,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·중견기업의 신주·구주에 50% 이상 투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운용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기준 적용 배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 투자원금으로 투자비율* 산정 * 벤처기업 신주에 15% 이상 투자

<적용시기> '19.2.12.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

(6)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8의2)

<개정이유>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대상) 외국인근로자 ○ (특례내용)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19% 선택 가능 ○ (적용기간) '18.12.31.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○ (적용기한) '18.12.31.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기한) '21.12.31.

(9)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청절차 등 (조특령 §17)

<개정이유>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구체화

종 전	개 정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</p> <p>○ 감면액 계산방법</p> $\frac{\text{총합소득}}{\text{산출세액}} \times \frac{\text{근로소득금액}}{\text{총합소득금액}} \times \frac{\text{경영성과급}}{\text{총급여액}} \times \text{감면율 (50\%)}$ <p>※ 다만,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중복 적용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</p> $\left[\left(\frac{\text{총합소득}}{\text{산출세액}} \times \frac{\text{근로소득금액}}{\text{총합소득금액}} \right) - \text{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} \right] \times \frac{\text{경영성과급}}{\text{총급여액}} \times \text{감면율 (50\%)}$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</p> <p>○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*</p> <p>*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신청방법</p> <p>○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에게 제출</p> <p>○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</p>

<적용시기> '19. 1. 1.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

(10)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
(조특법 §30, 조특령 §27)

<개정이유>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청년, 노인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 <추 가> ○ (감면율) 7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의 경우 90% ○ (감면기간) 취업일로부터 3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의 경우 5년 ○ (절차)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○ (적용기한) '18.12.31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의 경우 '21.12.31.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장애인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<li style="margin-left: 20px;">(좌 동) ○ (절차)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○ '21.12.31.

<적용시기> (대상) '19. 2. 12.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(절차) '19. 1. 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11) 월세 세액공제 확대 (조특령 §95)

<개정이유>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근로자 등)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,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* 성실사업자,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 - (주택)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○ (공제율) 1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2% 적용대상자) 총급여액 5.5천만원 이하 근로자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○ (공제한도) 월세액 연 750만원 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대상 주택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(주택)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 ○ (좌 동) ○ (좌 동)

<적용시기> '19. 2. 12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

(12)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(조특법 §126의2)

<개정이유>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

종 전	개 정						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</p> <p>○ (공제대상) 총급여액 25%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</p> <p>○ (공제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카드 : 15% 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: 30% - 전통시장·대중교통 : 40% - 도서·공연 사용분 : 30%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 <p>○ (공제한도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급여액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천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만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천만원~1.2억원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0만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2억원 초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통시장사용분 ● 대중교통사용분 ● 도서·공연사용분 <p>○ (적용기한) '18.12.31.</p>	총급여액	공제한도	7천만원 이하	300만원	7천만원~1.2억원 이하	250만원	1.2억원 초과	200만원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(공제율) 30% 적용 대상에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추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: 30%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서·공연 사용분에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좌 동) ● (좌 동) ●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<p>○ '19.12.31.</p>
총급여액	공제한도								
7천만원 이하	300만원								
7천만원~1.2억원 이하	250만원								
1.2억원 초과	200만원								

<적용시기> '19.1.1.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(단,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은 '19.7.1.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)

(13)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(조특령 §121의2)

<개정이유> 납세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보완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누락된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신청 허용 (영수증 등 증명서류 첨부시)

(14)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·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(조특령 §121의2)

<개정이유> 도서·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

종 전	개 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·공연 매출분으로 인정 *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- 도서(서점) : 3억원 - 공연(극단, 공연기획사 등) : 7,500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단,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% 이상인 경우로 한함

(15)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(조특령 §121의2)

<개정이유> 면세점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함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건강보험료, 대학등록금, 상품권 구입비, 월세액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점(시내·출국장면세점, 기내면세점, 지정면세점)

<적용시기> '19. 2. 12.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